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 전환**

◆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사는 신규 서비스 개발, 자체적 보안능력 강화에 소극적  
 ⇒ 사전적·전지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사후적 책임은 강화

- 1] (사전규제 최소화) 금융당국이 서비스 보안수준을 '사전적'으로 점검하던 기존 태도를 버리고 '사후적' 관리 강화에 역량을 집중
-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여 금융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시성있는 서비스 출시 도모

< IT부문 신규사업 추진시 단계별 보안대책 의무 >

단 계	사업계획		사업추진	사업완료	운 영
대 책	자체 보안대책 수립·보안성 심의	보안성 심의		취약점 분석평가	정기적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점검
수 행	금융회사	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금융회사

- '취약점 분석평가' 내실화,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테마 검사 실시 등 사후적 검사 강화를 병행
- 전자금융거래용 보안·인증수단에 대한 사전 규제로 작용해왔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
-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시설·정보기술·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규제를 개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 ②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IT 신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기술장벽 철폐
- 공인인증서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
  - '14년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15년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 ③ (책임부담 명확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의 금융 소비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하여 핀테크사업 제휴 활성화에 기여
- 금융회사 등만을 금융서비스 책임자로 한정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다수기관 공동 서비스의 책임분담을 명확화
    -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사고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전자금융업자의 금융소비자 책임 부담에 있어서도 금융사고 이행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책임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함
    -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 가입금액을 사고발생건수, 지급거래 처리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증액
- ④ (규제 예측성 강화) 소극적·방어적인 규제 적용이 아닌 적극적인 규제 해석 등을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
-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미비사항을 적극 보완하고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하여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 확보
    - 전자금융분야 규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주요 민원답변 등을 담은 설명서 또는 FAQ를 제작·배포
  - 현행 법률상 관련 규율의 범위가 불분명한 등 법적 불안정성이 있는 서비스·상품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의 활발한 활용 유도
  - '14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 'IT·금융융합협의회'를 '15년중에도 운영하여 핀테크 관련 사업자·금융회사·당국간 소통 강화

## 나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에 대한 제도의 포용성이 낮음

⇒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

1]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고 기본방안 마련

-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
-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 필요성 및 보완방안 강구

2]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노력과 함께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방안 마련

\*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발의)이 국회 계류 중

- 하위법령 정비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등 클라우드 펀딩 제도 안착 조치를 신속히 완료
- 클라우드 펀딩 투자에 정책펀드 또는 민간 벤처캐피탈의 참여 유도

3]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Omni) 채널 트렌드에 대응

- 펀드 슈퍼마켓('13.9월)에 이어 보험슈퍼마켓 도입
- IFA·IWA\*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

\*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금융상품자문업

\*\* IWA(Individual Wealth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4]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금융산업 지원**

○ 금융당국·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14.12.23 발표)의 금융권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 **비식별화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新금융상품 개발과 부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집중기관이 출범할 경우 동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

○ 금융거래(결제·여신·자산운용 기록 등) 정보의 분석·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결제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호 업종·지역 등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

\* 카드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既개정('13.9월), 여신협회의 여신금융연구소('15.1월 신설)를 통해 빅데이터 관련 연구 강화

**5] (결제부문 낡은 규제정비) O2O\* 거래, 모바일 서비스 등 新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

\* O2O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Online ↔ Offline)

예) 배달앱으로 구매 → 오프라인 배송

매장방문 → 사용자인식 → 쿠폰 제공 → 구매

○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 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차질없이 시행**

○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 허용(6월), 매체분리원칙 폐지(1월) 등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

## 다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은 낮은 금융규제 환경, 높은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 등으로 금융·결제시장 진입 및 활동에 애로를 호소

⇒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등 관계기관의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을 집중하여 핀테크 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

### 1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IT·금융 융합을 위한 선진국형 지원 체계를 구축

○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이 협력하여 「핀테크 지원센터」 설립(관계부처 협조)

- 핀테크 서비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규제해설, 자금지원,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효과 극대화

○ 보안·인증분야 핀테크 단위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민간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 금융보안원 등 민간기구가 보안·인증기술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토록 하여 금융회사들의 검증 비용 감축,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신뢰성 획득을 도모

### 2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도모

○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제한 완화 추진(중기청 협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핀테크 기업은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벤처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규모 확대

- 산은·기은의 대출·투자 등 2천억원, 신보·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 형태로 '15년 중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적극 추진

③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 진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핀테크 산업 활성화 촉진

- 해외사례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는 현행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큰 폭 완화

\* 현행 자본금 기준 : (선·직불) 20억원 (PG·결제대금예치) 10억원

-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 혼란 우려가 비교적 적은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은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 대폭 완화된 등록요건(자본금 최대 1억, 전산인력 확보 기준 하향 등)을 적용하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영업만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겸영을 허용

④ (전자지급수단 이용 활성화) 전자지급수단 발행·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한도규율 방식을 전환하여 소비자 활용도 증대

- 기명식 지급수단은 현행 발행권면한도 규제를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로 전환

- 직불수단은 비대면 수단의 경우에도 1일 이용한도를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

⑤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전자금융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규율로 개선

-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여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

-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서비스 실질에 맞는 업종 등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전자금융업과 다른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겸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회사 특성에 맞는 건전성 기준 마련 등 합리적 규제

## 실천계획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IT·금융융합

	상반기	하반기	'16년	임기내
사전규제 최소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규제최소화 지속추진
기술중립성 원칙구현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책임부담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규제예측성 강화 지속 추진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마련	관련 법안 개정 추진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	온라인 기반 자산운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판매채널 혁신 지속 추진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노력 지속	자본시장법 통과시 클라우드 펀딩 하위규정 마련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도입방안 마련		
결제분야 낡은규제 정비	모바일 카드 단독발급 허용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방안 마련	핀테크 지원센터 출범·운영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벤처캐피탈의 투자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 활용방안 마련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정비방안 마련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법령 정비 실무 TF 구성·운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